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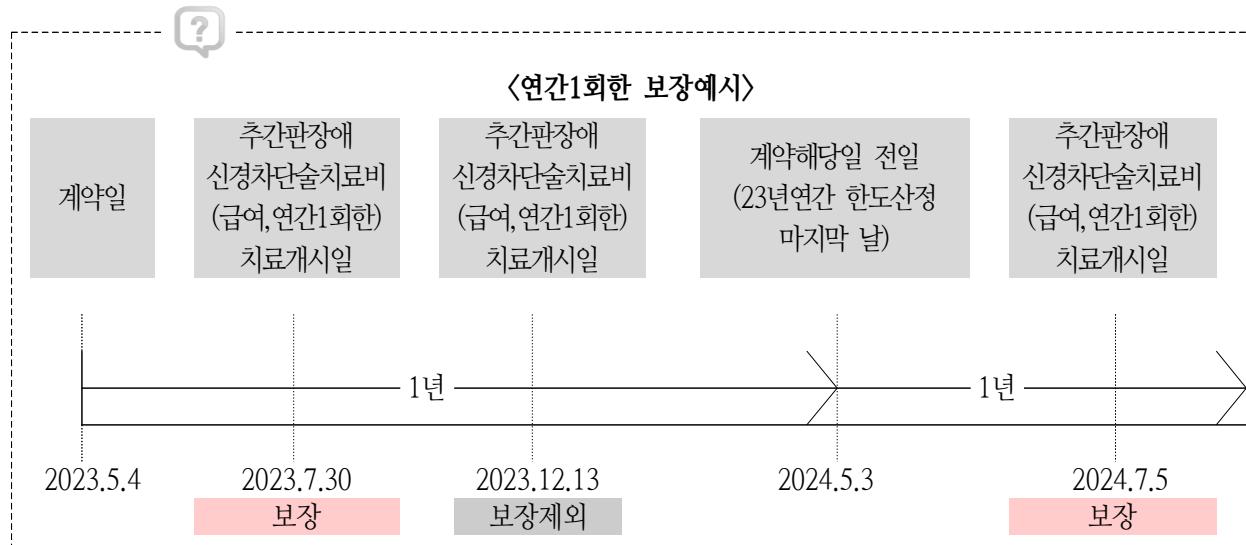
3-27.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3-28.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날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별표67〉 '추간판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추간판장애'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 '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67-1>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 분류표'에서 정한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및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8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

이 조항은 갱신형 특별약관에만 적용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제9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